##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주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869

발의연월일: 2020. 11. 30.

발 의 자:이주환·서병수·김정재

김예지 • 박대출 • 김병욱

김기현 · 김용판 · 지성호

최승재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, 소비자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·용어·성능·절차·방법·기술 등에 대한 표준인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최근 단체표준에 대한 중복성 논란 및 단체표준에 미달하는 단체표준인증 표시제품의 유통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, 시장에 유 통되는 민간인증제품의 품질확보기반의 구축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단 체표준 촉진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 흡한 상황임.

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단체표준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###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"보급"을 "보급·지원"으로 한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체표준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7조(단체표준의 제정 등) ①・	제27조(단체표준의 제정 등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단체
	표준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
	지원을 할 수 있다.
③ 단체표준의 제정·등록·운용·	<u>4</u>
<u>보급</u>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	<u>보급·지원</u>
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	
다.	